

2025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2차) 공고

경기 침체 및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5년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14.

보은군수

1. 지원근거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의2

2.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명 : 2025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7. ~ 12.
- 신청 및 접수 : 대표자 본인 방문접수(기관, 단체, 견적업체 대리신청 불가)
- 2025. 7. 14.(월) ~ 7. 25.(금) ※ 신청기간 내 접수분까지만 유효
- 접수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경제정책팀
- 제출서류(붙임1 참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1, 2), 증빙자료
- 대상사업 :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단순 물품 구입은 지원 제외)
예시) 간판교체, 도배, 페인트, 조명, 화장실, 주방 등 인테리어 공사
- 지원한도 : 사업비의 80% 범위 내 (자부담 20%) 최대 1,000만원 지원
※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 지원계획 : 17개소 정도(예산 범위 내 사업량 변동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업체 등은 관내 업체로 선정 권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한도

- 사업자등록 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영위(보은군 청년창업의 경우 영위기간 해당없음)하고 있으며
-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 ※ 청년창업 :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18세부터 45세 이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1,000만원 지원(자부담 20%)

(보조금 계산 예시 1) 총 사업비 8,800,000원(공급가액 8,000,000원, 부가세 800,000원) 인 경우

- 보조금 : 공급가액 8,000,000원 × 0.8% = **6,400,000원**

- 자부담금 : (공급가액 8,000,000원 × 0.2%) + 부가세 800,000원 = **2,400,000원**

(보조금 계산 예시 2) 총 사업비 14,850,000원(공급가액 13,500,000원, 부가세 1,350,000원) 인 경우

- 보조금 : 공급가액 13,500,000원 × 0.8% = 10,800,000원 ⇒ **10,000,000원(최대 1천만원 한도)**

- 자부담금 : (공급가액 13,500,000원 × 0.2%) + 부가세 1,350,000원 + 지원한도 초과금액 800,000원
= **4,850,000원**

4. 지원제외 대상

○ 제외대상 업체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정 중일 때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붙임2 참조)
- 대기오염, 소음·진동, 수질오염, 폐기물이 발생하는 환경유해 업종
- 최근 3년('22~'24) 지원받은 사업장 및 유사사업 참여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인 소상공인
- 국세, 지방세 체납자

○ 제외대상 자금

- 토지매입 자금, 임대료, 전세자금

5.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선정기초 자료 : '24년 국세 , '24년 지방세 과세 증명서
- 선정방법
 - (국세·지방세 과세 증명서 기준) 신청자의 전년도 납부한 국세와 지방세 합산하여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 순으로 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 소상공인 <가점>
 - 물가안정보범업소(착한가격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가점>
 - 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등 프로그램 이수한 소상공인 <가점>
 -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창업 소상공인 <가점>
 -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가점>
- 배점기준 (총100점)

배점기준	배점	점수
합계	100	
국세+지방세 납부금액	75	붙임3 참조
[가점사항] 최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 소상공인	5	-
[가점사항] 물가안정보범업소 소상공인	5	
[가점사항] 컨설팅 등 프로그램 이수 소상공인	5	
[가점사항]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창업 소상공인	5	
[가점사항] 보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5	

※ 동점자 발생 시 국세+지방세 납부금액 배점이 높은자로 우선 선정하고 국세+지방세 납부금액이 동일한 경우 사업 영위 기간이 긴 소상공인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사업 추진 절차

1) 신청 및 접수

- 2025. 7. 14.(월) ~ 7. 25.(금) ※ 신청기간 내 접수 분까지만 유효
- 접수처 및 문의처 : 보은군청 경제정책실 (방문접수) ☎043-540-3234
-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등 붙임1 제출서류

2) 대상자 선정 및 선정통보

- 1차 : 서류 심사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소상공인 선정)
- 2차 : 현지 실사 (1차 서류심사 후 지원가능 순위자에 한하여 실시)
- 3차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8월 중)
- 선정통보 : 8월 중 선정자에 한하여 통보(예정)

※ 사업포기 시 후순위자 선정

3) 선정업체에 대하여 사업비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4) 사업 실시 및 완료 후 청구서 제출 및 사업비 교부

- 교부결정 후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은군의 승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완료 후 청구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계획서와 사업 내용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임차인의 경우 임대인의 미동의 포함)하거나 합당한 사유 없이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5) 사업비의 정산

- 신청금액과 사업비 정산 후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지원중지 및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붙임 1】

구비 및 제출 서류

구분	내용	확인
필수	- 사업신청서(서식1), 신분증 지참	
	- 사업계획서(서식2)	
	-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 견적서·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보은군 관내업체 선정)	
	- 주민등록초본(주소 내역 포함)<읍면사무소>	
	-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2024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목전체) <읍면사무소, 무인민원발급기>	
	-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읍행정복지센터, 무인발급기>	
	- 건축물대장(소유자 현황 포함) 1부<읍행정복지센터, 정부24>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 종업원 있는 경우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종업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 현장사진(사업신청 장소 등 현황 사진)		
해당자	- 차상위 계층 이하 대상자 증명서	
	- 공공기관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 이수증 각 1부.	

【붙임2】

경영개선 지원 사업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중	담배, 주류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중	총포 도매업
46779중	화약, 폭약 도매업
47599중	총포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7991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7992	계약배달 판매업
47993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47999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561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 구내 식당업
5621	주점업 (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9122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	도박 관련 운영업
91291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붙임3】 국세+지방세 심사 점수표

국세+지방세	점수
100,000원 이하	75
150,000원 이하	73
200,000원 이하	71
250,000원 이하	69
300,000원 이하	67
350,000원 이하	65
400,000원 이하	63
450,000원 이하	61
500,000원 이하	59
550,000원 이하	57
600,000원 이하	55
650,000원 이하	53
700,000원 이하	51
750,000원 이하	49
800,000원 이하	47
850,000원 이하	45
900,000원 이하	43
950,000원 이하	41
1,000,000원 이하	39
2,000,000원 이하	37
3,000,000원 이하	35
4,000,000원 이하	33
5,000,000원 이하	31
6,000,000원 이하	29
7,000,000원 이하	27
8,000,000원 초과	25

【서식 2】

2025년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사업 계획서

사업장 현황	소유 구분	소유		원	사업장면적	m ² (층)
		임차	전세	원		
	월세		원 (보증금: 원)			
입지 구분	<input type="checkbox"/> 주택가 <input type="checkbox"/> 학교·학원가 <input type="checkbox"/> 사무실주변 <input type="checkbox"/> 번화가 <input type="checkbox"/> 유흥가 <input type="checkbox"/> 시장 <input type="checkbox"/> 유원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수지계획	구분	신청일 현재 월평균			1년 후 예상 월평균	
	매출액	원			원	
	지출액	원			원	
	순이익	원			원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착수예정일) 2025. . . / (완공예정일) 2025. . .				
	사업장소					
	사업내용					
총사업비	원(보조 , 자담)					
투자명세	종류	소요액			산출기초	비고
		합계	보조	자담		
	합계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지면 부족 시 별지사용						
구비서류 1. 총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2. 현황사진(사업부분) 각 1부. (출력본 및 이메일 송부 가능) <e-mail제출 가능 washface@korea.kr / 파일명 “업체명”>						